제965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 (해양수산부)	1.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신설(신설) ○ 어선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 세부사항 규정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어선원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위험성 평가 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2.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대상 규정(신설)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대상이 되는 어선의 직업성 질병자 발생 인원을 규정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 ▶어선안전조업법 제34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등 신설(신설) ㅇ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심의·의결 사항, 구성, 회의 개최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함 – 어선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1개월 이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간,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보고 위무)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실시, 그 밖에 어선원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8명 이내 구성, 구성 비율) – 위원회의 회의 등(정기 · 임시회의 소집 시기, 과반수 찬성 의결, 회의록 기록 내용) –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어선원안전감독관 중재 요청,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와 어선원의 결정 준수 의무) – 회의 결과 등의 공지(심의 ·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을 선내 게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어선원에게 알려야 함) ▶어선안전조업법 제36조 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신설) ㅇ 재해예방시스템 운영, 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 처리 등에 따른 건강 정보 처리 등에을위한 근거 마련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25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 보존 의무(신설) ㅇ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 · 보존 방법 등을 정함 – 기록 · 보존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자료 보존 의무 기간 명시(3년간) ▶어선안전조업법 제28조 2.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의무(신설) ㅇ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체,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등을 정함 –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형태 · 색채 및 용도 등을 일정 기준에 준수하여 표기 관리해야 함 –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 부착해야 함 –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각 종류별로 기본모형에 맞추고, 일정 크기 · 기준 · 재료에 따라 제작해야 함 ▶어선안전조업법 제29조 3.안전 및 보건조치(신설) ㅇ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세부 사항 ㅇ 건강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 세부 사항 ▶어선안전조업법 제31조,제32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5.비중요 6.비중요 7.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기한 등(신설) ㅇ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계획서 수립·시행을 명령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어선안전조업법 제35조 5.어선원재해 발생 위험 시의 긴급조치(신설) ㅇ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의 중지, 어선원 대피, 지방해양수산청에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하 함 ㅇ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작업의 중지, 응급의료법에 따른 조치등을 하여야 함 ▶어선안전조업법 제37조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사용중지 등 시정조치 명령에 따를 의무(신설) ㅇ 어선소유자가 어선의 선체·기계·어구·설비 등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보건조치 또는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계 등의 사용 금지를 조치하지 않아,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당 선체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 어선소유자가 해당 선체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어선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당 선체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어선 내 게시판 등에 게시 ▶어선안전조업법 제39조 7.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등 의무(신설) ㅇ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수산청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ㅇ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및 과정 등의 사항을 기록·보존 –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제출 ▶어선안전조업법 제35조,제40조제43조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확대(강화) ㅇ 피난시설(방화문,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 고가저수조 외 지하저수조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추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비중요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자동차검사의 실시 등(강화) ㅇ 시행규칙 제80조의 자동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사항을 추가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원동기, 재생타이어, 연료장치,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부족합 판정사항 추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2.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 등 (강화) ㅇ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춰야 할 장비의 성능 수준을 강화 –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의 측정범위 및 정밀도 강화 , 전자장치진단기의 진단범위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강화)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기준에 감차 조치 추가 ㅇ 실적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한 처분 강화(최대 감차조치), 최소운송의무 미충족 시 처분 강화(감차 조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1.비중요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신설) ㅇ 운송사업자가 위 · 수탁 차주에게 금전적 요구 등 부당한 요구 금지 및 불법 튜닝을 금지하도록 하는 준수사항 및 처분기준 신설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위 · 수탁계약 시 부당한 금전 요구 금지 – 위 · 수탁차주의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차량 무단 견인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탈취 등 부당 행위 금지 – 화물의 종류 · 무게 · 부피 거짓 통보 또는 과적화물 운송 요구 금지 – 불법 튜닝 화물차 운행 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신설) ㅇ 행정의무 부과에 따른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21조 제26호~제31호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강화(별표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기준 강화(신설) ㅇ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미납 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 위반사실 공표(신설) ㅇ 법 위반 시 공표 항목, 공표 방법 및 절차 규정 – (대상)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 – (공표사항) 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기관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처분일 및 기간·처분권자·처분 내용 *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 –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하는 경우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되, 필요 시 신문·방송에도 게시 가능 –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1.비중요
9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 종료 신고의 대상 및 절차 (신설) ㅇ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신고 사유 구체화(안 제15조제7항)	1.비중요 2.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유출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변경,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의 2가지 사유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 ㅇ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종료신고 절차 규정 – 유출지하수 이용의 변경·종료시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2.유출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신설) ㅇ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하는 조치명령의 내용과 절차 규정(안 제15조의2)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수량의 모니터링,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령할 수 있음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내 조치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2회까지 연장 가능 ▶지하수법 제9조의2▶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0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안전부)	1.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및 이행기간 단축(강화) ㅇ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단축 – 금고가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1월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ㅇ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단축 –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경영개선권고의 이행기간은 1년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 경영개선요구의 이행기간은 2년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6조,제15조 2.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강화) ㅇ 금고가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에 총자산대비순자본비을 추가하여 규제 강화 (⇒ 경영실적 부실금고의 상근임원 선임을 제한) * 개정안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100분의 0 이상’ 요건 추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24조 3.대체투자 사업성 평가 근거 마련(신설) ㅇ 중앙회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 *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 아닌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예술품,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31조 4.외부회계감사 변형의견 시 조치사항 마련(신설) ㅇ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능력 부문에 ‘금고 외부회계감사 결과’ 평가항목 추가 – 외부회계감사 결과 변형의견 시, 경영관리능력 부문 1등급 하향, 연속하여 변형의견 시 추가 하향 가능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1조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조정의 기준(강화) ㅇ (매출총량기준 강화) 사업체가 매출총량을 초과할 경우, 차년도 매출총량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전년도 매출총량에서 초과분만큼 제외하도록 규정 ㅇ (총량 조정 및 부담금 감면) ‘도박중독 유병률’을 건전화 평가 항목으로 산입하여 매출총량의 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핵심관리지표로 선정하여 관리 – 핵심관리지표로 선정시, 지표의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패널티(매출총량 증·감액, 부담금 가중·경감 등)를 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1.비중요
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교육부)	1.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절차 강화(신설)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ㅇ (자격증 발급 신청자 결격사유 확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자격증업무 담당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며, 성범죄 전력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자격증 업무 담당기관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함 ㅇ (자격증 재발급 절차) ①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 경과 및 ②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 재발급시 제출 서류 규정(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 추가로,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 경과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에는 성범죄 전력 동의 여부 확인(안 제18조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	
1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육부)	1.교육부장관의 인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강화) ㅇ 교육감이 인정도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 발행자 및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령할 수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교과용도서 발행자의 수정 신청(신설) ㅇ 교과용도서 발행자가 수정 필요사항을 발견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신청을 하도록 함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